### 27.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소환장을 받았을 때에도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은 계속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공동 가정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 캠프 또는 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수감되는 경우, 최선을 다해서 자녀와의 연락을 유지하고 자녀가 그곳에서 하는 긍정적인 활동들을 지원하십시오. 자녀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여 자녀가 돌아올 때에 대비하십시오. 자녀가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가석방 집행관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부모 그룹이나 상담 같이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자녀가 속한 교육구 및 지역 병원 또는 정신건강국에서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_____ 카운티
# 소년법원
# 부모를 위한 정보

소년비행법원(delinquency court)의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자녀를 보호하고, 선도 및 처벌하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청소년 비행을 저질러 법원의 피후견인(ward)이 되면, 법원은 자녀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명령을 발부합니다.

법원의 피후견인이 되면:

1. 자녀는 법원의 감독 하에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는
2. 자녀는 자녀의 연령, 비행의 중대성 및 자녀의 비행 경력에 따라 부모의 집이 아닌 구금 또는 비구금 시설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신청(petition) 및 다른 서류에는 자녀가 특정 비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기재된 내용은 증명된 것이 아니나, 부모는 자녀가 어떤 비행을 저질러서 기소되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신청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1. 자녀가 체포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마도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연락을 취해서 자녀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Form Approved for Optional Us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JV-060 K (Korean) [Rev. January 1, 2006]



American LegalNet, Inc.
www.USCourtForms.com

부모는 출두요청서(Notice to Appear, 보호관찰국에 출두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음)를 받습니다.

자녀가 매우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으로부터 직접 출두요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자녀가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체포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자녀를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자녀와 동행하여 집으로 가거나 체포 장소로 돌아가고, 연락처 기록을 유지합니다.

b. 자녀를 보호소, 감독, 전환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합니다.

c. 일부 카운티에서는 자녀가 보호관찰국이 아닌 경찰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이러한 조치를 "재소환(cited back)" 이라고도 합니다).

d. 부모와 자녀에게 출두통지서를 전달하고, 부모와 자녀가 해야 할 일과 부모가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e. 체포 직후에, 자녀를 보호관찰 소년원에 감금합니다(이것을 "구금" 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경찰관에 의해 구금 또는 억류된 경우에는 체포 후 한 시간 이내에 최소한 두 통의 전화를 걸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부모, 후견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친척 또는 고용주에게 걸어야 하며 직접 이러한 사람들과 통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변호사에게 걸어야 하며 직접 변호사와 통화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발생한 사건에 관해 자녀를 심문하려면 자녀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자녀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자녀가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고, 자녀가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란다(Miranda) 권리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자녀를 심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권리에 대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24. 자녀에게 부과된 수수료를 부모가 지불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아닌 한, 부모는 카운티로부터 자녀의 변호사 수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습니다. 부모는 보호관찰국 서비스 수수료(자녀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음식 및 세탁 비용 같은), 그리고 Division of Juvenile Justice, 보호관찰 캠프, 또는 가정 외 시설 같은 주정부 시설에 자녀를 수용하는 비용에 대해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고액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비용 중의 얼마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소년법원에서는 지불 능력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5. 자녀의 청소년 범죄 기록을 봉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자동으로 봉쇄되지 않으며, 일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차량국)과 관련된 유죄 판결 같이 봉쇄할 수 없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봉쇄하려면 자녀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는 18세가 되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료된 지 5년(어떤 경우에는 6년) 후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국은 자녀가 그 후에 다른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록 봉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그 사건과 체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봉쇄하라는 명령이 발부됩니다.

자녀의 변호사나 보호관찰관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26. 자녀의 소년법원 기록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삼진법 하에서는 청소년일 때 범한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특정 중죄가 스트라이크로 계산되어 미래에 자녀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년법원의 기록을 봉쇄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면회 시간 동안에 자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면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한 번에 2-3시간씩 허용되나, 수용 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 여성 전용 시설인 Ventura 수용 센터는 한 번에 6½시간까지 면회를 허용합니다. 부모는 수용 센터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 수 없으나, 편지는 쓸 수 있습니다. 자녀는 공중전화에서 수취인 요금 부담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2. 자녀는 어떤 경우에 Division of Juvenile Justice (DJJ) 대신에 Division of Adult Operations로 가게 될까요?**

자녀가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 Adult Operations로 보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질문 19와 20 참조). 자녀가 성인으로서 재판 받게 되면 자녀의 상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모든 결과에 관해 자녀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이 14세와 16세 사이인 자녀는 성인 교도소로 보내라는 선고를 받았더라도 DJJ에 수감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16세 이상이고 성인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판사는 자녀를 DJJ가 아닌 성인 교도소에서 형기를 복역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6세 이상이고 자녀의 연령이 21세가 되기 전에 형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전체 형기를 DJJ에서 복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형기가 21세가 지난 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까지 DJJ에 있을 수 있고, 18세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Division of Adult Operations로 이감됩니다. 또한, 법원은 16세 이상 된 자녀를 직접 Division of Adult Operations로 보내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23. 부모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는 법원이 자녀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상금이란 자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배상금의 예에는 훔쳤거나 손상시킨 재산의 가격, 치료비 및 임금 손실 등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떤 장소에 감금 또는 억류하는 경우, 경찰관은 즉시 부모에게 자녀가 구금되었다는 사실과 억류된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부모에게 통지할 때에도 자녀에게 보장되는 각 미란다 권리에 관해 부모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3. 출두통지서를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아직 변호사가 없으면 공선변호사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a. 보호관찰관이 자녀를 꾸짖은 후에 소년법원을 개입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b. 보호관찰관이 자녀에게 법원에 가는 대신에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마다 다르고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녀가 이러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특별 강좌, 물질 남용 상담, 지역사회 봉사 수행, 낙서 지우기, 또는 카운티에 청소년 법원 또는 동료 법원이 있는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소년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하면 보호관찰관은 부모와 자녀가 할 일들을 기술한 비공식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대 6개월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c. 보호관찰관은 자녀의 사건을 지방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으며, 지방검사는 신청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부모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아니오,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는 자녀를 대리하며 부모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5. 자녀에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는 유능하고 준비된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6. 자녀의 보호관찰관이 지방검사가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청은 자녀의 생활에 법원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에는 주정부가 확신하는 자녀의 비행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신청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의 조항 번호를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a. **601 신청.** 601 신청은 보호관찰국이 제출하고 자녀가 도주했거나, 학교를 결석했거나, 통행금지를 위반했거나,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그러한 신청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청소년은 법원의 "피후견인" 이 되고 "우범 소년" 이라고 부릅니다.

b. **602 신청.** 602 신청은 지방검사실이 제출하고 성인이 했다면 위법으로 간주되었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 그 자녀는 비행 소년의 신분으로 법원의 "피후견인" 이 됩니다.

   신청 602는 성인이 했다면 위법인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절도, 주거 침입, 규제물질(마약)의 판매, 성폭행 및 살인과 같은 중죄와 단순 폭행 및 음주 운전과 같은 경범죄가 포함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자녀를 체포한 후 소년원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계속 구금할 것인지는 보호관찰관이 결정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지방검사에게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자녀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지방검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방검사가 신청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제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8. 피해자가 처분 심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기본 권리에 의해 피해자는 심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심리 통지서를 받습니다.

**19. 자녀가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일부 중죄에 대해서는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 성인으로서 재판 및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성인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소년법원과 성인형사법원의 절차 및 철학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검사가 자녀를 성인으로서 재판 받을 것을 요청하면 자녀의 상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모든 결과에 관해 자녀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 어떤 중죄가 성인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녀는 광범위한 위법 행위에 대해 성인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폭력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살인 및 살인 미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방화,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흉기를 사용한 강도, 특정 형태의 성폭행, 특정 형태의 유괴 및 차량의 강탈, 총기와 관련된 특정 중죄, 특정 규제 물질과 관련된 위법 행위 및 청소년 구금 시설로부터의 특정한 폭력적인 탈주가 포함됩니다.

**21. 자녀를 Division of Juvenile Justice (DJJ)로 보내는 경우 어느 곳으로 갈까요?**

자녀는 먼저 30-90일 동안 수용 센터로 갑니다. 그 후에는 아홉 곳의 교도소 또는 네 곳의 청소년 캠프 중 하나로 보냅니다. 다음의 세 수용 센터에서 직원들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를 확인합니다:

a. Ione 소재 Northern Youth Correctional Reception Center and Clinic, Preston Youth Correctional Facility and Reception Center and Clinic (209-274-8000)

b. Norwalk 소재 Southern Youth Correctional Reception Center and Clinic (562-868-9979)

c. Ventura Youth Correctional Facility (미성년 여자용) (805-485-7951)

c. 자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친척집, 사설 주거 공동 가정, 또는 기관 프로그램에서 거주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자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캠프 또는 랜치에 갈 수 있습니다.

e. 자녀는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 Juvenile Justice (DJJ)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형사법원이 자녀를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 Adult Operations로 보내도록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19와 20 참조).

f. 부모는 상담이나 부모 교육 같은 조건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부모가 심리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출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주법은 부모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위법 행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이를 위해 가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보여줄 수 있으면 판사가 자녀를 방면하도록 명령하여 부모의 보호 아래 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16. 부모가 심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판사가 부모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 또는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발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판사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의 변호사는 자녀를 대신해서 발언합니다. 지방검사는 주정부를 대신해서 발언합니다. 보호관찰국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17. 부모와 자녀는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자녀는 통역사를 요청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경우 요청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자녀를 구금하는 경우, 법은 매우 신속하게, 보통 자녀가 경찰에 의해 구금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후에는 법원이 개원하는 다음 날 구금 심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원하지 않습니다.

**8. 자녀는 소년원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구금 심리에서, 판사는 자녀가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소년원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리에 대해서는 질문 1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자녀에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년원에 계속 남아 있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9. 소년원에 있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방문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언제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10. 보호관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호관찰관은 자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법원 판사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가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호관찰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조치를 판사에게 건의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자녀의 이전 체포 기록; 현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술; 자녀, 가족 및 자녀를 잘 아는 다른 사람의 진술; 학교 생활기록부; 피해자의 진술이 포함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 보고서를 처분 심리에 제출합니다.

자녀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명령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관찰하여 그 자녀가 법을 따르고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업 교육, 상담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권유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상황에 따라 최대 일주일에 두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납니다.

자녀가 구금되어 있고, 판사가 자녀를 사건이 종결된 직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결정하면, 보호관찰관은 자녀를 보낼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친척집,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위탁 및 공동 가정 또는 사설 기관 등이 있습니다.

**11. 부모와 자녀는 법원 심리에 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녀가 구금된 경우에는 신청을 제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심리가 열리기 5일 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및 심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심리가 열리는 경우에는 늦어도 심리가 열리기 24시간 전에 심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심리 통지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늦어도 심리가 열리기 10역일(calendar day) 전에 직접 또는 1종 우편으로 신청 및 심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12. 자녀가 소년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심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 **구금 심리.** 자녀가 소년원에 48시간 이상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구금 심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시한은 법원 근무일만 계산해야 합니다(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 구금 심리에서는 판사가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b. **심리 전 회합 또는 화해 회합.** 심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출두 일정을 정하는 카운티가 많습니다.

c. **신청 심리.** 법원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추가로 제기된 문제들을 심리하기 위해 법원 출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 **적합성 심리 또는 권리포기 심리.**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 지방검사는 자녀를 성인법원에서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적합성 심리에서 자녀를 성인법원 또는 소년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소년법원에 "부적합" 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성인법원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합성 심리를 받지 않습니다.

e. **관할권 심리.** 판사는 관할권 심리에서는 자녀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결정합니다.



f. **처분.** 판사가 자녀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결하는 경우, 그 판사는 처분 심리에서 자녀에 관해 어떤 명령을 발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자녀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경우에는 처분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처분 심리는 때때로
관할권 심리와 같은 날에 그 심리가 끝난 직후에 열립니다.

g. **사후 심사 심리.** 법률이나 법원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자녀의 진도와 성과를 심사하기 위한 심리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관할권 심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신청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합니다.

자녀의 변호사는 자녀의 인정 여부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경쟁 심리, 즉 "재판" 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사가 사건에 대해 자녀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의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판사는 이러한 증거에 근거하여 자녀가 고발된 행위를 했는지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진정한 사실 인정(true finding)" 을 하는 경우, 이것은 판사가 자녀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진정한 사실 인정" 을 한 후에 처벌을 결정하기 위한 처분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자녀가 고발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판사는 사건을 기각합니다. 자녀가 구금되어 있으면 방면됩니다.

**14. 처분 심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판사는 다음의 여섯 가지 조치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a. 자녀는 집에 있을 수 있으나 최대 6개월 동안 보호관찰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b. 자녀는 집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관찰국의 정식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감독은 판사가 결정합니다.